

< 변경 대비 표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국공채]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9.06.24.

3. 주요 변경 사항 :

- 투자대상자산 보완
- 신탁업자보수율 인하
-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추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규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15조(자산운용 지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3. <u>증권금융회사 및 본 조 제 2 호에 해당되는 기관 등이 발행한</u>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 19 조제 1 항제 6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분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 19 조제 1 항제 6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분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투자신탁 보수)	<u>*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15</u>	<u>*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1</u>
제 44 조(투자신 탁의 해지)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 (현행과 동일)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동일)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 48 조(금전차 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p>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동일)</p> <p>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p>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⑥ (생략)</p> <p>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u>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① ~⑥ (생략)</p> <p>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u>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투자 대상	*투자대상 자산 등 3. <u>증권금융회사 및 2.에 해당되는 기관 등이 발행한</u>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투자대상 자산 등 3.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투자 제한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특수위험	<신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

		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보수율: 연 0.015%	*신탁업자보수율: 연 0.0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5부.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 5 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신탁업자보수율: 연 0.015%	*신탁업자보수율: 연 0.01%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5. 투자실적 추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신설>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

		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